
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1. 1.

(주) 쿠피스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제 64 조의 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
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
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
제출합니다.

2021 년 1 월 20 일
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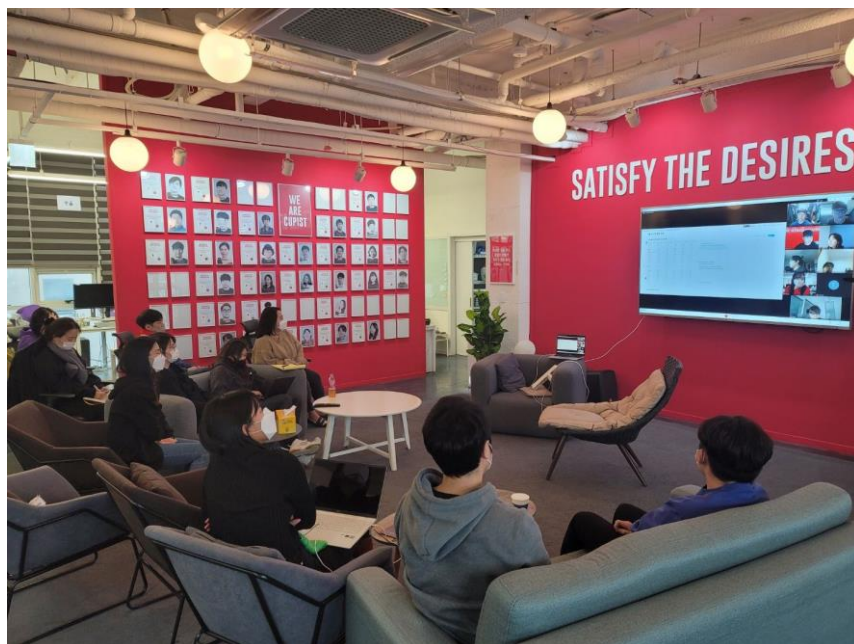
1. 일반현황 ('20년 12월말 기준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(주) 큐피스트
대표자	안재원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GLAM / 126,249명
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	*2019년 12월말 기준 약 63억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운영팀 윤원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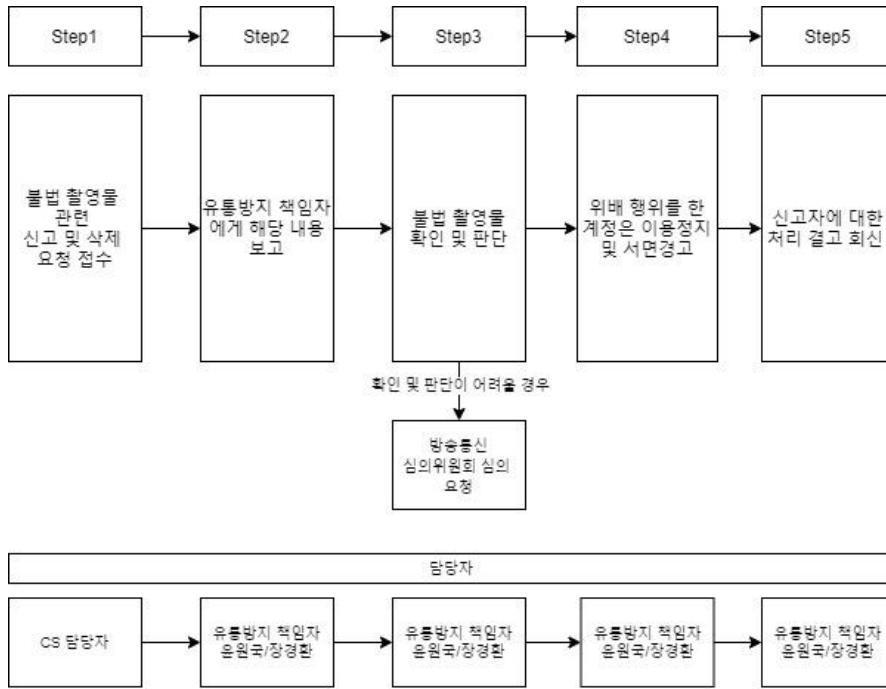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1.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대한 제도를 내부적으로 안내 실시: 2020.12.04

-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도는 정보통신방법 제 44 조의 9 항,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35 조의 2 항에 의거하여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, 유통방지 책임자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,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제도에 대하여 내부 교육 실시



4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

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1.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접수될 경우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게시물 및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삭제한다. 단, 확인·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.
2.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정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한다.
3. 해당 불법촬영물 등 게시자에게는 경고 문구를 통하여 주의 안내를 보낸다.
4.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.

기타 운영관련 사항

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.

1.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2.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

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 분	정	부
성 명	윤원국	장경환
부 서	운영팀	운영팀
직 책	COO	사원
지정일	2020.12.28	2020.12.28

6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

구분	교육일	교육명	참석자	시간	교육기관
교육 참여	2020.12.04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	윤원국 COO 장경환 사원	1 시간	자체교육
교육 참여	2021.01.08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 및 신고시 처리 방안	승인요원 5명	1 시간	자체교육
교육 참여	2021.01.09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 및 신고시 처리 방안	승인요원 5명	1 시간	자체교육